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348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을 활용한 경영전략을 확산시키고 표준화된 지식재산경영 모델 제시 및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디자인권 조기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우선심사 대상 확대(안 제6조제7호)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우편번호: 302-701)
- 전자우편 : lims21c@korea.kr
- 팩스 (042)472-74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 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전화 042-481-5766, 팩스 042-472-7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p> <p>1. ~ 6. (생략)</p> <p>7.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p> <p>7의2. ~ 13. (생략)</p>	<p>제6조(우선심사의 대상) -----</p> <p>-----</p> <p>-----</p> <p>-----</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7. -----</p> <p>-----</p> <p>-----</p> <p>--- 또는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p> <p>7의2. ~ 13. (현행과 같음)</p>